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견 검토보고

□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 중 별표(경기도조례 제3184호)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3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동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7인이내,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6인 이상 9인 이내로 함. (제2조)
- 상임위원회 소관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 (제3조제②항제3호다목)

□ 검토의견

- 상임위원회 설치 (안 제2조)

현 행	개 정
1. 운영위원회 5명	1. 운영위원회 5인 이상 7인이내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이상 9인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이상 9인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법률 제6663호, 2002. 3. 7)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경기도조례 제318

4호, 2002. 4. 27)제2조중 별표의 개정으로 인구 3만명 이상인 교하읍과 조리읍의 의원정수가 각각 1인에서 각각 2인으로 증원되어 파주시의회 의원정수도 13인에서 15인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향조정한 것이며,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 (안 제3조②항3호다목)

상수도시설 증설에 따라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 (행정자치부 자제12200-961호, 2001. 12.28 및 경기도 기획 12200-100 12, 2002. 1. 4)되면서 동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과 내용타당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①自治區·市·郡의 地方議會(이하 "自治區·市·郡議會"라 한다) 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邑·面·洞[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構成) 第5項의 行政洞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人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改正 1998.4.30, 2002.3.7>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 거 구 역	비고
파주시	15		
문산읍 선거구	1	문산읍 일원	
파주읍 선거구	1	파주읍 일원	
법원읍 선거구	1	법원읍 일원	
교하읍 제1선거구	1	교하리, 하지석리, 당하리, 와동1리, 와동4리, 와동5리, 와동6리, 목동리, 문발리, 신촌리, 송촌리, 연다산1리, 연다산2리, 오도1리, 오도2리, 다율1리~다율3리	
교하읍 제2선거구	1	상지석1리, 상지석2리, 상지석3리, 상지석4리, 와동2리, 와동3리, 와동7리, 와동8리, 야당1리, 야당2리, 야당3리, 야당4리, 야당5리, 동패1리~동패6리, 산남리, 서패리	
조리읍 제1선거구	1	대원1리~대원5리, 봉일천3리~봉일천6리, 장곡1리~장곡3리	
조리읍 제2선거구	1	대원4리, 봉일천1리, 봉일천2리, 봉일천7리~봉일천9리, 뇌조1리~뇌조3리, 오산1리, 오산2리, 등원1리, 등원2리, 능안리	
월롱면 선거구	1	월롱면 일원	
탄현면 선거구	1	탄현면 일원	
광탄면 선거구	1	광탄면 일원	
파평면 선거구	1	파평면 일원	
적성면 선거구	1	적성면 일원	
군내면 진동면 선거구	1	군내면 진동면 일원	
금촌1동 선거구	1	금촌1동 일원	
금촌2동 선거구	1	금촌2동 일원	